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

해당 사항 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

협회표준코드	펀드명	발생일자	비고
KR5210AV4326	신한BNPP유럽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-재간접형](종류A-e)	20160224	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대상]

해당 사항 없음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신한BNP파리바
자산운용

